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2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1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2월 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조성미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 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,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,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2월 단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 조정
-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 제한을 반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'로 변경
-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정비 및 미비점 보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본 조례안은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까지에서 부과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도 2개월 단축하고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, 그 밖에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가.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함(안 제2조)

【포상금 지급대상 축소 조정】

- 제2조(지급대상) : 지난년도 체납액 => 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(12월 31일까지)로부터 2월 미경과분 제외)

【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변경】

○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

- 종 전 :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
- 변경 : 부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○ 당해 연도

- 현행 : 회계연도 끝난 후 2월(1.1 ~ 익년 2.28)까지 당해 연도
- 개정 :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(1.1.~12.31.)까지 당해 연도

나.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정비 및 미비점 보완

- 제2조제3항제1호 :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=>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으로 조문을 변경함
- 제3조(지급기준)제5호 : 미신고자 정용료 부과 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'부과

· ‘액’에서 ‘징수액’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의 용어의 표현과 일치시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였음

- 제3조(지급기준)제6호(탈루세액) :

1) 지방세기본법 제138조(포상금 지급)내용 과 우리 구 조례 제3조(지급기준) 제6호(탈루세액 등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제공 시 지급기준)내용이 중복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중복조문을 삭제하였고

- 2) 제7조(지급)제2항 내용 중 제5호 및 제6호 => 우리 구 중복조문 삭제로 제6호를 삭제함

다.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조례 내용 정비(별지 제2호서식)

- 법령상 근거 없는 현행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 「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 지급대상)」의 납세의무자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변경함

○ 동(同) 조례안은 2015.11.26.~12.16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, 또한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2개월이 단축되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였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등 타 관련법의 저촉여부 검토 결과 중복되는 조례 표현은 혼란방지를 위해 우리 구 조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,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조문 및 잘못 표현된 내용이나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는 조례문구는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